

2023. 5. 22.(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5월 22일 오전 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  
공정경제담당관

공정경제담당관	정 덕 영	2133-5360
방문판매관리팀장	조 진 숙	2133-5370
담 당 자	문 정 신	2133-5386
관련 누리집	<a href="http://sftc.seoul.go.kr/">http://sftc.seoul.go.kr/</a>	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6쪽

### 서울시, 불법 고금리 대출피해 구제나선다..집중신고기간 운영

- 5.22.(월)~7.31.(월) 미등록업체, 불법 고금리·채권추심, 불법 대부 광고 집중 구제
- 지난해 불법대부업 피해 유형 분석 결과...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이 50%에 달해
- 신고하면 전문가가 이자율 계산 후 잔존채무액 제시...무료 법률지원 및 피해구제 안내
- 연말까지 633개 업체 시구 합동점검 진행, 불법대부광고 전화 원천차단 '대포킬러'도 운영

# 아르바이트생 박씨는 불법대부업자로부터 원금 30만원에 1주일 후 50만 원 상환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. 1주일 후 상환이 어려워진 박씨는 연체이자 10만원만 지급하면 추가대출을 해주겠다는 또 다른 불법대부업자를 소개받았고 이후 3개월 간 31곳의 불법대부업체와 얽힌 결과 대출 원금만 1천 만원에 이르게 됐다. 대부업자들은 박씨에게 욕설과 폭언은 물론 부모와 친척들에게 전화로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을 이어갔고 박씨는 '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'에 도움을 요청했다.

센터 조사 결과 박씨의 총 대출금은 980만원이나 불법대부업자의 요구액은 총 2,350만원으로 이 자율이 법정이자율 훨씬 초과한 700%에 이르는 상황이었다. 센터는 대부업자들과 빠른 중재를 통해 요구액 중 1,600만원을 감면했고 일정 이자와 원금 상환방식으로 마무리했다. 박씨는 더 이상 불법채권추심도 당하지 않게 됐고 중단했던 학업도 이어나갈 수 있었다.

<5.22.(월)~7.31.(월) 미등록업체, 불법 고금리·채권추심, 불법 대부 광고 집중 구제>

- 서울시가 5월 22일(월)부터 7월 31일(월)까지 ‘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 신고대상은 ▲미등록 대부업체 ▲불법 고금리 대출·채권추심 ▲불법대부광고 피해 등이다.
  
-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‘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’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,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이 신고자 상담과 해결방안 제시부터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직접 지원한다.
  
- 아울러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.
  - 현재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’이나 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’에 처하고 있다.
  
- 시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들이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‘소액고금리 일수대출’과 ‘불법 채권 추심’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.
  - 지난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374건 중 ‘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’ 상담이 187건(50.0%)으로 가장 많았고, ‘불법채권추심’(64건, 17.1%)이 뒤를 이었다.

<신고하면 전문가가 이자율 계산 후 잔존채무액 제사·무료 법률지원 및 피해구제 안내>

- 피해구제는 일차적으로 전문가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 확인 후 대출원리금을 알려주고, 만일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‘부당이득금 반환’이나 ‘잔존채무 포기’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·채무관계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
-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살펴보면 고금리 일수를 받고 정해진 날 상환하지 못해 일명 ‘꺾기’로 불리는 추가 대출을 연속해서 받은 결과 나중에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 불법대부업자가 달라는 대로 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았다.
- 아울러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입은 채무자에게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‘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사업’과 ‘파산회생제도’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법도 안내해 준다.
-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▲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(개인회생, 파산·면책, 채무대리인 지원) ▲법률구조공단(법률전문상담) ▲서민금융진흥원(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) 등 정부·민간단체도 연계해준다.
- 불법추심 행위 신고 및 상담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 (☎1600-0700, 4번 대부업), 누리집(<http://sftc.seoul.go.kr>) 또는 다산콜센터(☎120) 등으로 하면 된다.

다음 10가지 사례는 ‘불법추심’ 행위입니다.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     |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|
|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     | ⑦ 협박·공포심·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    |
|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      | ⑧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  |
| ④ 야간(저녁 9시~아침 8시)의 전화 또는 방문 |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      |
|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  |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     |

<연말까지 633개 업체 시구 합동점검 진행, 불법대부광고 전화 원천차단 ‘대포킬러’도 운영>

□ 한편,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불법대부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‘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’를 운영하고 있다. 지난해 총 374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구제 액수는 1억 8,000여만 원에 달했다.

※ '16. 2월~'23. 3월: 구제건 554건, 구제액 약 47억원

□ 이와 함께 불법대부 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‘대포킬러시스템’도 운영 중이다. 2017년 10월 도입된 ‘대포킬러’는 일종의 무제한 자동발신프로그램인데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기계가 자동으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번호가 차단되는 방식이다.

○ ‘대포킬러시스템’을 통해 '17년 10월부터 '23년 4월까지 총 2만 3,300여 건의 통화를 차단했고,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8,639건을 이용정지했다.

□ 이외에도 연말까지 시-자치구가 함께 대부(중개)업자들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 63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. 집중단속 대상은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, 소재 불명 또는 연락두절업체 등이다.

- 영업실적이 없거나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업체 대부분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업체인 경우가 많아 단속을 통해 자진폐업 유도,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시민피해 발생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.
- 단속 항목은 ▲불법 고금리 일수대출(최고 연 20%) ▲대부계약서 기재사항 ▲과잉 대부 ▲담보권 설정비용 및 대부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, 영업정지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과 즉시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.
- 지난해 554개소 대상 현장점검 결과 ▲과태료(83건) ▲영업정지(21건) ▲등록취소(48건) ▲수사의뢰(5건) 등 행정지도 100건을 포함해 총 25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.
- 박재용 서울시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은 “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금융취약계층으로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”며 “신고된 건에 대해서 상담부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빠르게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—————<<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 안내 >>—————

- ▶ 전화상담 : 1600-0700, 4번 대부업(오전10시~오후5시)
- ▶ 온라인상담 :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(<http://sftc.seoul.go.kr>) 누리집
- ▶ 방문상담 :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, 시티스퀘어빌딩 4층
- ▶ 법률전문상담 : 집중 신고기간(23.5.22~7.31./ 매주 화, 오후 2시~5시)

**1. 대출은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**

-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자인지, 등록된 전화번호인지 확인\* 후 거래

\*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(fine.fss.or.kr) 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」를 통해 등록대부업자 여부 및 등록 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

**2. 법정 최고금리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**

-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(20.0%)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므로 초과지급된 이자는 원금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요구

**3. 명함형 전단지, SNS 동영상,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허위·과장 광고에 유의**

- “ 최저금리 대출 가능 ”, “ 누구나 대출 ”, “ 신용불량자 가능 ” 등 허위·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

**4.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등 대부중개수수료 지급요구는 불법**

- 대출상담시 수수료, 사례금,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이에 응하지 않도록 유의

**5. 고금리,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「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\*」를 활용**

-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는 제도